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48호

남대문구역 제7-2,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35호(2018.04.11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남대문구역 제7-2, 9-2 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.

2018년 5월 2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남대문 제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

1) 남대문 제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: 변경없음

2)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: 변경없음

3)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

4)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) 설치계획

가) 도 로 : 변경없음

나)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계획(도로)

◎ 정정 전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구분	기 정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소로1-a	도로	회현동 1가 194-34	연장(m)	54m	서고 제2012- 155호 (2012.0 6.14.)	주1)
				폭(m)	10m		
				높이(m)	지하2m ~ 지상8m~14m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하2m초과, 지상8m~14m초과 비도시계획시설		
				면적(m ²)	547.1m ²		
변경	소로1-a	도로	회현동 1가 194-34	연장(m)	54m	서고 제2012- 155호 (2012.0 6.14.)	주2)
				폭(m)	10m		
				높이(m)	지하2m ~ 지상5.9m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하2m초과, 지상5.9m초과 비도시계획시설		
				면적(m ²)	549.5m ²		

주1) 회현동 1가 195-4번지(평균해수면 36.88m)와 회현동 1가 194-1번지(평균해수면 42.97m)를 연결하는 연장 54m구간(경사로 구간은 직선보간하여 보정)에 대하여 지하로부터 2m(평균해수면 34.97m~40.97m) ~ 지상8m~14m(평균해수면 50.87m) 사이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

주2) 회현동 1가 195-4번지(평균해수면 36.88m)와 회현동 1가 194-1번지(평균해수면 42.77m)를 연결하는 연장 54m구간(경사로 구간은 직선보간하여 보정)에 대하여 지하로부터 2m(평균해수면 34.97m~40.77m) ~ 지상5.9m(평균해수면 42.77m) 사이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

◎ 정정 후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 명	위 치	구분	기 정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 (변경 없음)	소로1-a	도로	회현동 1가 194-34	연장(m)	54m	서고 제2012-155 호 (2012.06.1 4.)	주1)
				폭(m)	10m		
				높이(m)	지하2m ~ 지상8m~14m 지하2m초과, 지상8m~14m초과		
				면적(㎡)	547.1㎡		

주1) 회현동 1가 195-4번지(평균해수면 36.88m)와 회현동 1가 194-1번지(평균해수면 42.97m)를 연결하는 연장 54m구간(경사로 구간은 직선보간하여 보정)에 대하여 지하로부터 약2m(평균해수면 34.97m~40.97m) ~ 지상8m~14m(평균해수면 50.87m) 사이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

5)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6)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: 변경없음

7) 건축시설계획(변경) : 변경 없음

2. 정정사유

-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35호(2018.04.11.) 고시된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인 소로1-a의 입체도로 조서 중 높이의 착오기재(변경사항 없음)에 대한 정정임

3. 열람장소
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8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